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1317호 2018. 1. 22.(월)

공 고

-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----- 2
- 목포시 시민소통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----- 3

기 타

- 시정 알림판----- 8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시 제2018-88호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(제60조의3제3항)·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8. 1. 22.

목 포 시 장

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A4 1매당 100원	• USB(4GB기준) 복사분량 → 1개당 13,760원 • CD(4GB 기준) 복사분량 → 1개당 1,000원	

목포시 공고 제2018-102호

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『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. 22.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『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, 시민과의 소통을 향상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정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사항 (안 제2조)
- 시정모니터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시정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시정모니터의 활동과 교육 및 인터넷 창구 개설 (안 제5조)
-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5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 부서 의견

- 부패영향 평가(감사실)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분석 영향 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사항 없음

7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8. 예산상황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9. 입법예고 : 2018. 1. 22. ~ 2. 11.(21일간)

10. 사전 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1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1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9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 061-270-3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 목포시 시정모니터단의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제시
2.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미담사례 등 제출
3. 시 행정의 위법·부당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시정모니터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시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.

②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③시정모니터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시정모니터의 위촉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전출,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고의로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경우
3. 시정모니터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4. 품위를 손상하여 시정모니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5조(활동) ① 시정모니터는 구두나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6조(접수처리) ①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.

② 접수부서에서는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대장에 기록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 모니터와 접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접수 대상 제외)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기 접수 또는 조치된 사항
2.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시행 예정인 사항
3. 노점, 불법주정차, 불법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단속관리중인 사항
4.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 등

제8조(시상) 시장은 제안 및 활동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준수 의무) 시정모니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「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정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시 정 알 림 판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

-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(1953. 1월생) 이상 보훈대상자
- ※ 참전(6·25, 월남전)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
- 지 급 액 : 월 3만원 (매월 20일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(국가보훈대상자증, 예금통장 사본, 신청서 지참)
- ※ 보훈대상자 개별 안내문 발송

사회복지과 ☎ 061-270-8446

자동차세 연납 신청

- 신청기간 : 2018. 1. 31.(수)까지
- 신청방법 : 시청 세정과 전화·방문, 위택스, ARS(☎080-270-8880)
- 납부장소 :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
- 납부방법 : 은행납부, 인터넷(위택스), 신용카드, 가상계좌, ARS, 모바일 앱(스마트 위택스) 등
- ※ 1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연세액의 10% 공제 적용(3월 7.5%, 6월 5% 할인)



세정과 ☎ 061-270-3448

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- 기 간 : 2018. 1. 15.(월)~2018. 3. 30.(금) [75일간]
- 조사방법 :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 조사 및 개별 조사
- 중점 조사대상 :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, 사망의심자, 만 100세 이상 고령자 등
- 중점 조사내용
 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안내
- ※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 시 최대 75% 경감



시 정 알 림 판

2018년도 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」 사업 신청자 모집

-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 ⇨ 동일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에서 매칭 적립
 - 저축기간 / 월 적립금 : 3년(36개월) / 20만원(본인 10만원, 도 지원10만원)
 - 1인당 만기적립금 : 720만원(본인 360, 도 360) + 이자(연 2.3% 수준)
- 신청기간 : 2018. 1. 17.(수)~1. 30.(화)
-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 - 연 령 :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(1978. 1. 18.~2000. 1. 17. 출생)
 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
 - 근로 : 최근 180일(2017. 7. 21.~2018. 1. 16.)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
 - 소득 : 최근 180일(2017. 7. 21.~2018. 1. 16.)동안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(세금공제 전)이고,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
- 모집인원 : 전라남도 전체 500명

일자리정책과 ☎ 061-270-8771

목포 청년 일자리 카페 개관

- 참여대상 :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(만19세~39세)
- 장 소 : 엔젤리너스 옥암점(목포시 옥암로 82)
- 운영시간 : 월요일~금요일, 13:00~19:00
- 운영내용 : 취업상담, 이력서&면접컨설팅, NCS 정보제공, 현장면접 등

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☎ 061-283-7535

새로운 공연·행사·전시 소식

☑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입춘대길 소장품 기획전시 《오방색의 어울림展》

- 전시기간 : 2018. 2. 2.(금)~2018. 4. 1.(일)
- 전시장소 :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본관동 1층
- 전시작품 : 30여점(한국화, 문인화, 서양화, 서예, 사진)
- 관 랑 료 : 무 료

☑ 문화가 있는 날 영화상영 《레미제라블》

- 상영기간 : 2018. 1. 27.(토) 17:00~19:00
- 상영장소 :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
- 관 랑 료 : 무 료

